강릉 아테라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0.25.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329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강릉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4.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강릉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10.25.(금)	‘24.11.06.(수)	‘24.11.07.(목)	‘24.11.08.(금)	‘24.11.14.(목)	‘24.11.16.(토)~’24.11.24.(일)	‘24.11.25.(월)~’24.11.27.(수)

Ⅰ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1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잔여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rteragn.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Ⅱ 청약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25.(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릉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2024.04.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11.06.(수)	'24.11.07.(목)	'24.11.08.(금)	'24.11.14.(목)	'24.11.16.(토)~'24.11.24.(일)	'24.11.25.(월)~'24.11.27.(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함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공급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는 공급금액과 별도로 인지세의 50%를 공급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최종 매수자 포함)의 경우에도「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재 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거래금액별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인지세 납부방법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지참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인지세의 50%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3.11.10. 개정에 따라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간주]**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택과 - 28817(2024.10.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회산동 53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7~28층 3개동 총 329세대**
[특별공급 127세대(기관추천 24세대, 신혼부부 44세대, 생애최초 21세대, 다자녀가구 30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2024000630	01	084.5615A	84A	084.5615	24.9262	109.4877	57.7817	167.2694	44.2557	36	3	6	3	3	1	16	20	2
	02	084.4635B	84B	084.4635	24.2016	108.6651	57.7147	166.3798	44.2044	137	16	29	14	16	4	79	86	6
			84B1	084.4635	24.8619	109.3254	57.7147	167.0401	44.2044	28								
	03	084.5402C	84C	084.5402	25.9570	110.4972	57.7671	168.2643	44.2446	54	5	9	4	5	1	24	30	2
	04	099.3490	99	099.3490	28.6114	127.9604	67.8861	195.8465	51.9948	17	-	-	-	1	1	2	15	1
	05	115.4262A	115A	115.4262	32.9500	148.3762	78.8720	227.2482	60.4089	28	-	-	-	5	1	6	48	2
			115A1	115.4262	32.2971	147.7233	78.8720	226.5953	60.4089	26								
	06	146.4527P	146P	146.4527	44.7796	191.2323	100.0730	291.3053	76.6468	1	-	-	-	-	-	-	1	-
	07	147.9143P	147P	147.9143	47.0437	194.9580	101.0716	296.0296	77.4117	1	-	-	-	-	-	-	1	-
	08	166.5569P	166P	166.5569	52.8033	219.3602	113.8105	333.1707	87.1684	1	-	-	-	-	-	-	1	-
	합 계									**329**	**24**	**44**	**21**	**30**	**8**	**127**	**201**	**13**

※ 주택형 관련 안내사항 : 당 사업지 84B 및 84B1, 115A 및 115A1 주택형의 경우 동일한 전용면적 및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각 단위세대의 배치의 차이로 복도공간 등의 면적 및 구조에 차이가 있어, 소폭의 공용면적 및 공급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형은 동일한 전용면적 및 구조로 공급되므로 혼선을 막기 위하여, 주택형 기준으로 통합하여 청약 및 계약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84B/84B1 → 084.4635B, 115A, 115A1 → 115.4262A]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주택형)		084.5615A	084.4635B	084.5402C	099.3490	115.4262A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6	1	-	-	**8**
	국가유공자	-	2	1	-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1	-	-	**4**
	장기복무 제대군인	-	2	1	-	-	**3**
	중소기업 근로자	1	4	1	-	-	**6**
신혼부부 특별공급		6	29	9	-	-	**44**
생애최초 특별공급		3	14	4	-	-	**2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16	5	1	5	**3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4	1	1	1	**8**
합 계		**16**	**79**	**24**	**2**	**6**	**12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 금액표**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동/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잔금
									2025-03-25	2025-07-25	2025-11-25	2026-03-25	2026-07-27	2026-11-25	입주지정일
084.5615A	101동 3호 103동 3호	1층	2	105,595,000	325,405,000	-	431,000,000	21,55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50,850,000
		2층	2	108,045,000	332,955,000	-	441,000,000	22,05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54,350,000
		3층	2	109,760,000	338,240,000	-	448,000,000	22,4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56,800,000
		4~10층	14	111,475,000	343,525,000	-	455,000,000	22,75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59,250,000
		11~19층	16	113,435,000	349,565,000	-	463,000,000	23,15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62,050,000
084.4635B	102동 1,2호 102동 3호 103동 1,2호 103동 3호	1층	6	105,105,000	323,895,000	-	429,000,000	21,45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50,150,000
		2층	6	107,310,000	330,690,000	-	438,000,000	21,9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53,300,000
		3층	6	109,025,000	335,975,000	-	445,000,000	22,25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55,750,000
		4~10층	42	110,740,000	341,260,000	-	452,000,000	22,6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58,200,000
		11~20층	60	112,455,000	346,545,000	-	459,000,000	22,95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60,650,000
		21~28층	45	114,415,000	352,585,000	-	467,000,000	23,35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63,450,000
084.5402C	101동 2호 102동 4호	1층	2	105,595,000	325,405,000	-	431,000,000	21,55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50,850,000
		2층	2	108,045,000	332,955,000	-	441,000,000	22,05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54,350,000
		3층	2	109,760,000	338,240,000	-	448,000,000	22,4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56,800,000
		4~10층	14	111,475,000	343,525,000	-	455,000,000	22,75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59,250,000
		11~20층	20	113,190,000	348,810,000	-	462,000,000	23,1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61,700,000
		21~28층	14	115,150,000	354,850,000	-	470,000,000	23,5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64,500,000
099.3490	102동 5호	1층	1	120,506,741	371,357,508	37,135,751	529,000,000	26,45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85,150,000
		2층	1	123,012,552	379,079,498	37,907,950	540,000,000	2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3층	1	125,062,762	385,397,489	38,539,749	549,000,000	27,45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92,150,000
		4~10층	7	127,112,971	391,715,481	39,171,548	558,000,000	27,9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95,300,000
		11~17층	7	129,163,180	398,033,473	39,803,347	567,000,000	28,35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98,450,000
115.4262A	101동 1호 103동 3호	1층	1	140,325,430	432,431,427	43,243,143	616,000,000	30,8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215,600,000
		2층	2	142,603,440	439,451,418	43,945,142	626,000,000	31,3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219,100,000
		3층	2	144,653,649	445,769,410	44,576,941	635,000,000	31,75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222,250,000
		4~10층	14	146,703,859	452,087,401	45,208,740	644,000,000	32,2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225,400,000
		11~20층	20	148,754,068	458,405,393	45,840,539	653,000,000	32,65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228,550,000
		21~28층	15	151,032,078	465,425,384	46,542,538	663,000,000	33,15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232,050,000
146.4527P	102동	28층	1	226,662,018	698,489,075	69,848,907	995,000,000	49,75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348,250,000
147.9143P	102동	28층	1	226,662,018	698,489,075	69,848,907	995,000,000	49,75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348,250,000
166.5569P	101동	28층	1	259,693,166	800,278,940	80,027,894	1,140,000,000	57,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114,000,000	399,000,000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주택형별, 층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 세대별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 선택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실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하였으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에 대하여는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주말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른 세대별 대지지분의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 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편집, 인쇄 과정 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Ⅳ 특별공급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Ⅰ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2023.11.10.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 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함
</td></tr>
</table>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부 강원동부보훈지청 복지팀 ■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함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 신청 가능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2">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able></td></tr>
</table>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강원특별자치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4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 신청 가능**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0.2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IV-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 신청 가능**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 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table>
<tr><td></td><td>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따라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본 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td></tr>
<tr><td>**비고**</td><td>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d></tr>
</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0.2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구분</th><th>당 사업지 해당 주택형</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84A, 84B(B/B1), 84C</td><td>40%</td><td>60%</td></tr>
<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99, 115A(A/A1), 146P, 147P, 166P</td><td>-</td><td>100%</td></tr>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 rowspan="6">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6">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able></td></tr>
</table>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가점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1.14.(목) ~ 2024.11.23(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11.14.(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공통)

- 모든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25.)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청약 자격의 정확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또는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안내하는 서류 외에, 사업주체는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세대주 및 세대원, 주소변동사항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세대주 및 세대원, 주소변동사항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민등록번호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 출력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본인 발급분의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전체포함)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지와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기 필요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가 위하여 직접(본인에 한함)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해당자	피부양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의 서류, 상기 본인발급분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해당 기관에서 기관추천 대상자로 추천함을 인증하는 서류,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직접 명단 전달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등본 등재로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발급분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등본 등재에 한함), 성명 및 주민번호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 구성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임신 또는 출산 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의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관련 진단서 등(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담당의명, 의료기관 등록번호·연락처, 출산예정일 등 기재 및 직인날인)
		◎	입양 관련 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의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사실 및 혼인신고일 확인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년 세대원 전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성년 세대원 전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서류의 종류는 아래 참고1 표에 따라 준비
		◎	임신 또는 출산 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의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관련 진단서 등(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담당의명, 의료기관 등록번호·연락처, 출산예정일 등 기재 및 직인날인)
		◎	입양 관련 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의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등재를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발급분의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로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하여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자격요건 확인용(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직계존속과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 등재 확인) 본인 발급분의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 된 경우 본인 발급분의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 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 등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인 발급분의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또는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신청자와 동일등본 등재에 한함) 본인 발급분의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해당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사실 확인용,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년 세대원 전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성년 세대원 전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서류의 종류는 아래 참고1 표에 따라 준비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성년 세대원 전원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분, 서류의 종류는 아래 참고2 표에 따라 준비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등재를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발급분의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
		◎	임신 또는 출산 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의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관련 진단서 등(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담당의명, 의료기관 등록번호·연락처, 출산예정일 등 기재 및 직인날인)
		◎	입양 관련 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의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로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등'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및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 요구서류	해당자	기타 해당 부적격 내용 소명을 위해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대조필, 본인 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서류제출 위임용
		◎	위임장	본인(신청자)	대리인에게 서류 제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에 준하는 서류 / 대리인의 도장인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관하며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참고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소득증빙과 관련하여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별도의 표기가 없어도 "직인 날인된 원본' 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직인 날인된 원본을 FAX등으로 받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재직증명서(원본에 한하며 직인 날인 필수, 직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 인정 불가)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해당 직장 ②해당 직장/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원본에 한하며 직인 날인 필수, 직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 인정 불가) ②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본, 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 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①,②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원본에 한하며 직인 날인 필수, 직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 인정 불가) ②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②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재직증명서(원본에 한하며 직인 날인 필수, 직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 인정 불가) 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해당 직장 ②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 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②세무서
	신규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 ②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①세무서 ②국민연금공단/세무서
	법인사업자(대표자)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전년도 재무제표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②,③,④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재직증명서(원본에 한하며 직인 날인 필수, 직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 인정 불가) ②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①해당 직장 ②해당 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해당 직장 ②해당 직장/세무서
무직자		①비사업자 확인각서 – 양식 견본주택에 비치 ②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폐업증명서	①견본주택 비치 ②세무서

>> 소득 관련 기타 안내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①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참고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재직증명서(원본에 한하며 직인 날인 필수, 직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 인정 불가)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해당 직장 ②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사업자등록증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세무서 ②건강보험공단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위촉(해촉)증명서 ※과거 1년 이내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①건강보험공단 ②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④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②세무서 ③,④해당 직장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구분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부동산 소유 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②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③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①,②등기소 ③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추가 (해당자)	①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 또는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①,②행정복지센터 ③위택스, 이택스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세대원별 각각 발급)를 인쇄하여 제출 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①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세대주 및 세대원, 주소변동사항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세대주 및 세대원, 주소변동사항 등 모든 사항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민등록번호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 출력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지와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기 필요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가 위하여 직접(본인에 한함)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해당자	피부양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의 서류, 상기 본인발급분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
가점제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해당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본인 발급분의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피부양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기준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등재를 확인하여, 가점 산정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발급분의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관련 내용 등 전체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 상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본인발급분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피부양 직계비속(자녀 등)을 기준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동안 계속하여 동일 등본 등재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관련 내용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본인발급분 유의사항에 준하여 발급
	▶ '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에 산입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부적격 통보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원,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등'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및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 요구서류	해당자	기타 해당 부적격 내용 소명을 위해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대조필, 본인 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서류제출 위임용
		◎	위임장	본인(신청자)	대리인에게 서류 제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에 준하는 서류 / 대리인의 도장인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관하며 서명으로 대체 가능

Ⅷ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일시	장소
정당당첨자 계약체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4.11.25.(월) ~ 2024.11.27.(수) 3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강릉시 교동 30)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을 확인하시고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입 후, 정당계약기간 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계약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입금확인증	본인	계약금 입금 확인증(이체확인증, 무통장 입금 영수증, 온라인뱅킹 이체내역 등)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조필, 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체결 불가
		◎	자격검증서류 일체	해당자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자는 제외, 일부 서류 미비 시 제출 후 계약 체결 가능
		◎	추가 개별통지서류	해당자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받은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대리인 계약 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당첨자)	인감증명서 대조필, 본인 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계약 체결 위임용, 상기 본인용 서류와 별도로 추가 1통 ※계약자(당첨자)가 본인사실서명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체결 불가
		◎	위임장	본인(당첨자)	대리인에게 서류 제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에 준하는 서류 / 대리인의 도장인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관하며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25.)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배우자 포함) 제3자로 간주하며,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입 안내

구분	금융기관(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입계좌	전북은행	1013-01-5171434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일체의 납부는 계좌로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및 수표 등은 일체 수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이 오기 또는 누락된 경우 필히 사업주체로 연락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105동 402호 계약자명 → 01050402아테라

-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여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금액 등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 외 수납된 금액은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좌와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계좌가 상이하오니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후 계약 체결 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되며, 별도의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분은 소명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정당계약 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동·호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는 무순위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정당계약 체결 기간 내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더라도,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자의 계약 체결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공급계약서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신청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신청접수분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단, 2024.03.25.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시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 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이 유효하고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되며,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합니다.
- 부부 외 세대원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의 재사용은 가능하나,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 착오에 의한 부적격인 경우 해당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계좌부활 요청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계좌부활이 가능합니다.
  ①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며,「주택법」제64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권 전매 시 계약자(원분양자)는 계약금 전액(총 공급대금의 5%)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킨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및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분양권 매도자) 및 양수인(분양권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전매행위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는 등 규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 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계약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피해를 보호하지 않으며, 분양권 매수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지위를 제한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을 통해 중도금 대출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 기간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이며,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 및 한도 등을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과 관련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관계법률의 변경 및 금융 관련 정부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주택소유현황,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대출 보유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고,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사항이며, 개별 계약자의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등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및 대출 불가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이 아닌 그 외 지역의 대출취급기관(본점 및 지점)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상 양도인 및 양수인의 대출취급기관 방문 관련)과 관련하여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 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거래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가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 대출 시 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 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계약자의 사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납부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알선 및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중도금대출은 계약금(5%) 완납 후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금이 일부라도 미납된 경우 중도금 대출 신청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추가 선택품목 관련 안내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안내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약식)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19,000,000	1,900,000	17,100,000
84B / 84B1	19,000,000	1,900,000	17,100,000
84C	19,500,000	1,950,000	17,550,000
99	23,000,000	2,300,000	20,700,000
115A / 115A1	27,000,000	2,700,000	24,300,000
146P	35,000,000	3,500,000	31,500,000
147P	35,000,000	3,500,000	31,500,000
166P	39,000,000	3,900,000	35,100,000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 및 견본주택에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에 의한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시공되는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을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 발생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선홈통 박스가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필요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정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또는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 시 관계 법령에 의거 인근 세대 입주자의 동의 등이 필요하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고,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입계좌**

구분	금융기관(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입계좌	전북은행	1013-01-5171478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계약금을 포함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 일체의 납부는 계좌로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및 수표 등은 일체 수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이 오기 또는 누락된 경우 필히 사업주체로 연락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105동 402호 계약자명 → 01050402아테라
-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여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금액 등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 외수납된 금액은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좌와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계좌가 상이하오니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후 계약 체결 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되며, 별도의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약식)	구분	선택	설치대수	설치위치	옵션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일반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4,800,000	480,000	4,320,000	LG전자
		선택2	5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000,000	700,000	6,300,000	
	프리미엄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5,300,000	530,000	4,770,000	
		선택2	5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700,000	770,000	6,930,000	
84B /84B1	일반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4,800,000	480,000	4,320,000	
		선택2	5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000,000	700,000	6,300,000	
	프리미엄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5,300,000	530,000	4,770,000	
		선택2	5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700,000	770,000	6,930,000	
84C	일반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4,800,000	480,000	4,320,000	
		선택2	5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000,000	700,000	6,300,000	
	프리미엄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5,300,000	530,000	4,770,000	
		선택2	5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7,700,000	770,000	6,930,000	
99	일반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4,800,000	480,000	4,320,000	
		선택2	6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8,400,000	840,000	7,560,000	
	프리미엄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5,300,000	530,000	4,770,000	
		선택2	6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9,300,000	930,000	8,370,000	
115A /115A1	일반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4,800,000	480,000	4,320,000	
		선택2	6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8,400,000	840,000	7,560,000	
	프리미엄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5,300,000	530,000	4,770,000	
		선택2	6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9,300,000	930,000	8,370,000	
146P	일반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5,500,000	550,000	4,950,000	
		선택2	7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알파룸	10,100,000	1,010,000	9,090,000	
	프리미엄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6,000,000	600,000	5,400,000	
		선택2	7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알파룸	10,900,000	1,090,000	9,810,000	
147P	일반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5,500,000	550,000	4,950,000	
		선택2	7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알파룸	10,100,000	1,010,000	9,090,000	
	프리미엄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6,000,000	600,000	5,400,000	
		선택2	7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알파룸	10,900,000	1,090,000	9,810,000	
166P	일반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5,700,000	570,000	5,130,000	
		선택2	7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알파룸	10,300,000	1,030,000	9,270,000	
	프리미엄형	선택1	3	거실 + 주방 + 침실1	6,200,000	620,000	5,580,000	
		선택2	7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알파룸	11,100,000	1,110,000	9,99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장 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실내기 1대 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스탠드형(1개소), 침실 벽걸이형 냉매배관(1개소)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과 침실에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상기 판매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며, 입주 시 관할관청으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옵션 품목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제품명	업체명	옵션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냉장고 +김치냉장고 (4개중 택1)	삼성전자 BESPOKE (3도어) (냉장1 + 냉동1 + 김치1)	84A	RR40C78(9)95AP RZ34C78(9)65AP RQ34C78(9)45AP	삼성전자	6,100,000	610,000	5,490,000	수납장 포함
		84B/84B1			6,100,000	610,000	5,490,000	
		84C			6,100,000	610,000	5,490,000	
		99			6,100,000	610,000	5,490,000	
		115A/115A1			6,500,000	650,000	5,850,000	
		146P			6,200,000	620,000	5,580,000	
		147P			6,900,000	690,000	6,210,000	
		166P			6,900,000	690,000	6,210,000	
	삼성전자 BESPOKE (4+3도어) (냉장/냉동4 + 김치3)	84A	RQ33C74E1AP RF60C90R2AP	삼성전자	6,200,000	620,000	5,580,000	수납장 포함
		84B/84B1			6,300,000	630,000	5,670,000	
		84C			6,300,000	630,000	5,670,000	
		99			6,300,000	630,000	5,670,000	
		115A/115A1			6,700,000	670,000	6,030,000	
		146P			6,400,000	640,000	5,760,000	
		147P			7,000,000	700,000	6,300,000	
		166P			7,000,000	700,000	6,300,000	
	LG전자 Objet (3도어) (냉장1 + 냉동1 + 김치1)	84A	BC1L2AA1 BC1F1AA BC1K2AA1	LG전자	6,400,000	640,000	5,760,000	수납장 포함
		84B/84B1			6,500,000	650,000	5,850,000	
		84C			6,400,000	640,000	5,760,000	
		99			6,500,000	650,000	5,850,000	
		115A/115A1			6,800,000	680,000	6,120,000	
		146P			6,600,000	660,000	5,940,000	
		147P			7,200,000	720,000	6,480,000	
		166P			7,200,000	720,000	6,480,000	
	LG전자 Ojbet (4+3도어) (냉장/냉동4 + 김치3)	84A	BC4S1AA1 BC3K1AA1	LG전자	7,900,000	790,000	7,110,000	수납장 포함
		84B/84B1			7,900,000	790,000	7,110,000	
		84C			7,900,000	790,000	7,110,000	
		99			7,700,000	770,000	6,930,000	
		115A/115A1			7,700,000	770,000	6,930,000	
		146P			7,500,000	750,000	6,750,000	
		147P			8,100,000	810,000	7,290,000	
		166P			8,100,000	810,000	7,290,000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	전 주택형	CDD-600B	코스텔	800,000	80,000	720,000	
식기세척기	전 주택형	DW60T7065SS	삼성전자	800,000	80,000	720,000	전면 가구판넬 부착
		DIB22S	LG전자	1,200,000	120,000	1,080,000	

- BESPOKE, Objet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BESPOKE, Objet 빌트인 패키지 마감 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로 설치 예정입니다.
- 상기 가전제품 옵션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며, 입주 시 관할관청으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옵션은 주방 구조 등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공 품목 무상옵션

품목	내용	주택형(약식)	옵션금액	비고
통합형 현관창고	선택1) 현관창고 + 복도 팬트리	84A/B/B1/C	무상제공(선택1, 2중 택1)	선택1,2중 택1
	선택2) 통합형 현관창고	84A/B/B1/C		

■ 시공 품목 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내용	주택형(약식)	옵션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전 주택형)	3연동 슬라이딩 중문(1FIX + 2DOOR)	84A	1,200,000	120,000	1,080,000	
		84B/84B1	1,200,000	120,000	1,080,000	
		84C	1,200,000	120,000	1,080,000	
		99	1,200,000	120,000	1,080,000	
		115A/115A1	1,200,000	120,000	1,080,000	
		146P	1,400,000	140,000	1,260,000	
		147P	1,400,000	140,000	1,260,000	
		166P	1,400,000	140,000	1,260,000	
바닥 마감재 특화 (전 주택형)	광폭 강마루(전실)	84A	600,000	60,000	540,000	
		84B/84B1	600,000	60,000	540,000	
		84C	600,000	60,000	540,000	
		99	700,000	70,000	630,000	
		115A/115A1	800,000	80,000	720,000	
		146P	1,000,000	100,000	900,000	
		147P	1,000,000	100,000	900,000	
		166P	1,200,000	120,000	1,080,000	

거실패키지 (84, 146, 147, 166 주택형)	주방장식장 미설치 시 (주방장식장 옵션 미선택) 84A, 84B(B1), 146P, 147P, 166P : 아트월 세라믹타일 연장 84C : 가구 FIX판넬 연장 ①거실(아트월) 세라믹 타일 ②복도 시트판넬, 가구판넬 ③천장 픽처레일 : 복도 1면, 소파 뒷벽(펜트 : 식당1면)	84A	5,300,000	530,000	4,770,000	주방장식장옵션 선택여부에따라 택1
		84B/84B1	5,300,000	530,000	4,770,000	
		84C	4,200,000	420,000	3,780,000	
		146P	10,600,000	1,060,000	9,540,000	
		147P	10,900,000	1,090,000	9,810,000	
		166P	11,500,000	1,150,000	10,350,000	
	주방장식장 설치 시 (주방장식장 별도옵션 선택) ①거실(아트월) 세라믹 타일 ②복도 시트판넬, 가구판넬 ③천장 픽처레일 : 복도 1면, 소파 뒷벽(펜트 : 소파 뒷벽 픽처레일 설치불가)	84A	3,400,000	340,000	3,060,000	
		84B/84B1	3,500,000	350,000	3,150,000	
		84C	3,600,000	360,000	3,240,000	
		146P	8,500,000	850,000	7,650,000	
		147P	8,700,000	870,000	7,830,000	
		166P	9,300,000	930,000	8,370,000	
거실패키지 (99, 115 주택형)	가변공간옵션 미선택 시 ①거실(아트월) 세라믹 타일 ②복도, 주방 1면 시트판넬 ③복도1면, 소파 뒷벽 천장 픽처레일	99	4,200,000	420,000	3,780,000	가변공간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택1
		115A/115A1	4,500,000	450,000	4,050,000	
	가변공간옵션 선택 시 ①거실(아트월) 세라믹 타일 ②복도 시트판넬, 가구판넬 ③복도1면, 소파 뒷벽 천장 픽처레일	99	4,100,000	410,000	3,690,000	
		115A/115A1	4,700,000	470,000	4,230,000	
주방 장식장 (84, 146, 147, 166 주택형)	주방 장식장 설치	84A	2,800,000	280,000	2,520,000	
		84B/84B1	2,800,000	280,000	2,520,000	
		84C	2,800,000	280,000	2,520,000	
		146P	2,800,000	280,000	2,520,000	
		147P	2,800,000	280,000	2,520,000	
		166P	2,800,000	280,000	2,520,000	
가변공간옵션 (99, 115 주택형)	선택1) ①알파룸 + 슬라이딩도어 ②주방장식장 + 복도팬트리	99	4,900,000	490,000	4,410,000	선택1,2중 택1
	선택2) ①알파룸 + 슬라이딩도어 ②주방장식장 + 복도팬트리 + 현관창고	99	5,400,000	540,000	4,860,000	
	①알파룸 + 슬라이딩도어 ②주방장식장 + 현관창고 확장	115A/115A1	6,600,000	660,000	5,940,000	

주방 상판 / 벽 마감재 (84, 115, 146, 147, 166 주택형)	선택1) 엔지니어드스톤 + 상부장 하부 LED 라인조명	84A	3,100,000	310,000	2,790,000	선택1,2중 택1
		84B/84B1	3,100,000	310,000	2,790,000	
		84C	2,400,000	240,000	2,160,000	
		115A/115A1	3,000,000	300,000	2,700,000	
		146P	3,000,000	300,000	2,700,000	
		147P	2,800,000	280,000	2,520,000	
		166P	2,800,000	280,000	2,520,000	
	선택2) 세라믹타일 + 상부장 하부 LED 라인조명	84A	5,100,000	510,000	4,590,000	
		84B/84B1	5,200,000	520,000	4,680,000	
		84C	3,000,000	300,000	2,700,000	
		115A/115A1	4,900,000	490,000	4,410,000	
		146P	5,000,000	500,000	4,500,000	
		147P	5,600,000	560,000	5,040,000	
		166P	4,900,000	490,000	4,410,000	
주방 상판 / 벽 마감재 (99 주택형)	선택1) 가변공간옵션 선택 시 엔지니어드 스톤 + 상부장 하부 LED 라인조명	99	3,800,000	380,000	3,420,000	가변공간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선택1~4중 택1
	선택2) 가변공간옵션 선택 시 세라믹 타일 + 상부장 하부 LED 라인조명	99	6,000,000	600,000	5,400,000	
	선택3) 가변공간옵션 미선택 시 엔지니어드 스톤 + 상부장 하부 LED 라인조명	99	3,100,000	310,000	2,790,000	
	선택4) 가변공간옵션 미선택 시 세라믹 타일 + 상부장 하부 LED 라인조명	99	5,100,000	510,000	4,590,000	
발코니 가구 (84 주택형)	발코니 가구 도어 + 4단 시스템 선반 + 시스템 판넬	84A	1,000,000	100,000	900,000	
		84B/84B1	1,000,000	100,000	900,000	
		84C	1,000,000	100,000	900,000	

주방패키지 (전 주택형)	선택1) ①주방 상판/벽 마감재 : 엔지니어드 스톤 ②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포함) ③독립형 후드 ④주방상판 하부 LED조명 ⑤아일랜드 하부 유리장식장(단, 84주택형 미적용)	84A	5,600,000	560,000	5,040,000	선택1,2중 택1
		84B/84B1	5,600,000	560,000	5,040,000	
		84C	4,900,000	490,000	4,410,000	
		99	7,200,000	720,000	6,480,000	
		115A/115A1	6,900,000	690,000	6,210,000	
		146P	7,200,000	720,000	6,480,000	
		147P	7,500,000	750,000	6,750,000	
		166P	7,500,000	750,000	6,750,000	
	선택2) ①주방 상판/벽 마감재 : 세라믹 타일 ②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포함) ③독립형 후드 ④주방상판 하부 LED조명 ⑤아일랜드 하부 유리장식장(단, 84주택형 미적용)	84A	7,500,000	750,000	6,750,000	
		84B/84B1	7,400,000	740,000	6,660,000	
		84C	6,500,000	650,000	5,850,000	
		99	9,100,000	910,000	8,190,000	
		115A/115A1	8,600,000	860,000	7,740,000	
		146P	9,000,000	900,000	8,100,000	
		147P	9,300,000	930,000	8,370,000	
		166P	9,300,000	930,000	8,370,000	
조명패키지	①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라인조명(직부등 삭제) ②거실 아트월벽 단천장 + 간접조명 ③주방 우물천장(신설) + 간접조명	84A	1,700,000	170,000	1,530,000	
		84B/84B1	1,700,000	170,000	1,530,000	
		84C	1,600,000	160,000	1,440,000	
		99	2,200,000	220,000	1,980,000	
		115A/115A1	2,300,000	230,000	2,070,000	
		146P	2,600,000	260,000	2,340,000	
		147P	2,600,000	260,000	2,340,000	
		166P	2,500,000	250,000	2,250,000	

수납패키지 (드레스룸 선반) (전 주택형)	선택1) 드레스룸 (화장대 분리형) :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선반	84A	3,200,000	320,000	2,880,000	선택1,2중 택1
		84B/84B1	2,800,000	280,000	2,520,000	
		84C	2,700,000	270,000	2,430,000	
		99	3,200,000	320,000	2,880,000	
		115A/115A1	3,300,000	330,000	2,970,000	
		146P	2,900,000	290,000	2,610,000	
		147P	2,900,000	290,000	2,610,000	
		166P	2,900,000	290,000	2,610,000	
	선택2) 드레스룸 (화장대 통합형) :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선반 + 디자인 파우더장 + 슬라이딩 도어	84A	4,100,000	410,000	3,690,000	
		84B/84B1	3,600,000	360,000	3,240,000	
		84C	3,400,000	340,000	3,060,000	
		99	4,200,000	420,000	3,780,000	
		115A/115A1	4,100,000	410,000	3,690,000	
		146P	3,800,000	380,000	3,420,000	
		147P	3,800,000	380,000	3,420,000	
		166P	3,900,000	390,000	3,510,000	
공용욕실 Style UP (84, 99, 115 주택형)	①욕실벽, 욕조 에이프런 : 포세린타일(600*600) ②수납형 욕조 수전 ③수전/액세서리 무광 니켈 마감, 비데일체형 양변기 ④복합환풍기	84A	1,800,000	180,000	1,620,000	
		84B/84B1	1,800,000	180,000	1,620,000	
		84C	1,800,000	180,000	1,620,000	
		99	1,800,000	180,000	1,620,000	
		115A/115A1	1,800,000	180,000	1,620,000	
공용욕실 Style UP (146, 147, 166 주택형)	①욕실벽 : 포세린타일(600*600) ②샤워부스 흑니켈 프레임, 캔버스 샤워수전 ③수전/액세서리 무광 니켈 마감, 비데일체형 양변기 ④복합환풍기	146P	2,100,000	210,000	1,890,000	
		147P	2,100,000	210,000	1,890,000	
		166P	2,100,000	210,000	1,890,000	
부부욕실 Style UP (84, 99, 115 주택형)	①욕실벽 : 포세린타일(600*600) ②샤워부스 흑니켈 프레임, 캔버스 샤워수전 ③수전/액세서리 무광 니켈 마감, 비데일체형 양변기 ④복합환풍기	84A	1,600,000	160,000	1,440,000	
		84B/84B1	1,600,000	160,000	1,440,000	
		84C	1,600,000	160,000	1,440,000	
		99	1,600,000	160,000	1,440,000	
		115A/115A1	1,600,000	160,000	1,440,000	
부부욕실 Style UP (146, 147, 166 주택형)	①욕실벽, 욕조 에이프런 : 포세린타일(600*600) ②수납형 욕조수전, 샤워부스 흑니켈프레임, 캔버스 샤워수전 ③수전/액세서리 무광 니켈 마감, 비데일체형 양변기 ④복합환풍기	146P	2,000,000	200,000	1,800,000	
		147P	2,000,000	200,000	1,800,000	
		166P	2,000,000	200,000	1,800,000	

- 상기 시공 품목 유상옵션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각 품목은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전제품 옵션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며, 입주 시 관할관청으로부터 계약자에게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전북은행	1013-01-5171503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계약금을 포함한 유상옵션 대금 일체의 납부는 계좌로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및 수표 등은 일체 수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이 오기 또는 누락된 경우 필히 사업주체로 연락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105동 402호 계약자명 → 01050402아테라
-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여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금액 등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 외수납된 금액은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좌와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계좌가 상이하오니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후 계약 체결 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되며, 별도의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X 단지여건 및 기타 안내사항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비서류 등의 내용 위·변조 행위 등으로 주택공급질서 교란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변경 승인된 인·허가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어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필히 확인하시어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이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지면적 및 지분 감소에 따른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외국인 부동산 등 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및 축사·공장 등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단지 주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교육부 학구도안내시스템 상 명주초등학교 통학구역이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계획세대수 및 규모), 공동주택 입주 시기 변경 등으로 학교 배정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작은도서관, 피트니스(1개소), 실내골프(1개소), 어린이집, 경로당, 키즈스테이션, 아테라 라운지 등입니다.
- 견본주택 모형도의 단지 출입구 및 차량게이트 설치 위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을 요하는 사항(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자재 선정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동의 및 승인에 대한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관련 사항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의 자재는 부득이한 경우 동질 및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세대를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기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가변경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내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인·허가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유상)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타입별 기본 제공품목 및 유상옵션 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본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드레인, 선홈통,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설치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천장의 몰딩, 세면대 선반 규격, 현관디딤판, 타일 나누기 등은 본공사 시 사용성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CCTV는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평면의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 대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 여건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공급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 발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상 층간·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금호건설㈜의 현장별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 발코니, 창틀, 색채디자인) 디자인을 포함한 단지 내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주진입은 각 동 배면의 주출입구를 이용하여 진입하며,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또는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1층 세대의 경우 하층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및 휀룸, D.A 등 부대복리시설로 인하여 소음, 냄새,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 입주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배치 계획을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오·우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 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인·허가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변경 또는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거나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인접상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

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계량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주동 벽면에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노출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단지 북동측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인근 세대는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비상시 소방용 안전매트 사용구간 장소에는 교목 및 관목이 식재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일부 소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 수전 및 배수가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와 배수 물막힘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하부세대의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바닥, 벽, 천장)만 제공되며, 그 외 공사는 제외됩니다.
- 단지 외곽 일부 부위에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층에 설치되며, 설비 일체는 단지여건, 신호강도, 통신사업자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거나 개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 및 중간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지상 D·A(드라이에어리어)의 크기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심의 및 인·허가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색채,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ELEV HALL 통행로에는 단열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주방 발코니 및 비확장 안방 발코니는 물사용 공간으로 바닥 구배가 적용되어있으며, 실내화 걸림 등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지분 비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라 내진등급(MMI등급) VII등급이 적용됩니다.
-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바닥에 층간소음 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오·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휀룸 또는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보행출입구는 단지 동측 주출입구 및 북측 부출입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주차구획은 지상 20대(아파트 17대, 근린생활시설 3대), 지하 510대로 총 530대(경차 0대, 장애인주차 20대, 전기차주차 9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형태 및 사양, 창호 및 창틀 색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 형태에 따라 이삿짐차량 진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구성 및 시설물은 실시공 시 확정되며 설계도면 및 분양카탈로그 등 홍보물 상의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마감은 석재 및 석재뿜칠, 페인트로 시공되며 적용 비율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1층 및 기준층은 2,300㎜ 및 최상층은 2,400㎜로 시공되며, 실시공 시 경미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천장 높이 2,400㎜ 적용 세대 : 101동 2801호, 102동 2801, 2803호, 103동 2801, 2802, 2803, 2804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이동통신구축지원센터와 관계된 사항으로 이동통신 품질 등에 의한 안테나 추가 여부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중계장치 설치위치 : 지하1층 102동 PIT
-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단지 내 총 4개소이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상의 사유로 인해 단지 출입구 부분이 위치 및 형태, 마감,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에 램프가 계획되어 있으며, 경사지로 인해 차량 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전기차 주차 구획 일부가 계획되어 있으며,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가 법정 수량에 따라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 경관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램프로 인해 인근 세대는 빛공해, 소음공해, 경관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북측, 서측으로 옹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옹벽의 높이 및 디자인, 구조, 형태는 인·허가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 도시계획도로(10m)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단지 북측 대지 레벨이 변경될 수 있고, 단지 북측의 옹벽 높이 및 조경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필로티에만 택배보관함이 설치됩니다.
- 101동 필로티에 MDF실이 계획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출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전면, 단지 남동측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3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과 연결하는 선큰 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공해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3동 전면 단지 남서측에 어린이집, 경로당, 키즈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인근 경비실의 대지 레벨이 진입 레벨보다 약 1.3m 높음에 따라 입주민 및 민원인의 경비실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동남측 구간은 천장고가 2.3m로 설계되며, 택배차량 및 이사차량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단지 여건에 따라 일부 세대는 서향으로 설계되며, 일조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여건에 따라 저층 세대는 일조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의 폭, 선형 및 포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 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지연 발생 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추후 소방서 점검 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 중 샘플 세대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품질 향상을 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접 도로 개통 전, 단지와의 레벨 차이에 의해 옹벽이나 별도 구조물이 노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입주 후 개통 시 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의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수목 식재가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규의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면적 및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마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계부 펜스 및 옹벽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의 분양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 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아파트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이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 제8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침실 및 욕실 문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시공되며, 본공사 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세사항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대칭형 타입의 경우, 분양 홍보물 대비 일부 각 실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우물천장,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공사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 설치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천장고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창문 하부 턱 높이 및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물빠짐을 위한 구배로 인해 바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단위세대 발코니 천장마감 및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측 벽체에 시공 줄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창문 손잡이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분전반은 관계법령에 따라 벽체에 노출되며, 분전반, 통합스위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 등 전기 자재의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늬가 표현된 자재류(세라믹 타일, 엔지니어드 스톤, 강마루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붙박이장류 등)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높이·전기용량 차이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현관 및 하향식피난구 방화문은 본공사 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석은 석재의 특성상 디딤 폭, 무늬, 색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타일 줄눈 위치 및 각 악세서리 위치는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현관창고,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현관창고,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현관창고,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내부에 설치되는 악세서리류 및 부자재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설치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자재, 주방상판,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벽지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 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열림 방향,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1, 욕실2, 침실1, 발코니1, 다용도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가구, 신발장, 침실붙박이장)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욕실의 욕조 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알파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 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 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 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패키지 옵션(독립형 후드) 선택 시 주방용 가스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용도실 내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용 가스배관만 시공이 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유상옵션 비데 리모컨 설치 위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에는 리모컨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여 드리오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 위치에 따라 부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됩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환기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 내 마루 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의 특성 상 뒤틀림·변형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천장에 설치되는 빨래건조대는 발코니 크기에 따라 사용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국내 생산되는 석고보드는 재생펄프를 사용하여 제작되며, 재생펄프로 사용되는 종이 중 컬러 인쇄된 종이가 섞여들어가 희석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료가 벽체에 배어나올 수 있으며 이는 시공 및 제품의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바닥은 물 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문 개폐 시 욕실화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플라스틱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문짝모서리 상,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욕실 내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 내 천장에는 상부세대의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입면)에 환기 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거실(스탠딩)과 안방(벽걸이)에 기본으로 매립되어 설치됩니다(단, 플러스옵션 항목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1층 부대복리시설 인접 세대는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피트층 인접층 및 최상층은 냉난방 효율이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공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드레인 / 선홈통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공사 마감(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한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마감재 품목 등은 편집과정상 오타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99㎡ 주택형 102동 17층 세대의 경우 침실1에 작은창(너비1m. 높이 0.5m)이 계획되며, 해당 세대 당첨자 및 계약자께서는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는 바닥마감 하부로 우수관이 지나가게 되며, 이로 인해 결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면 발코니가 없는 펜트층 세대는 빨래건조대, 수전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천정고가 기준층 대비 10㎝ 높게 설계되어 견본주택 대비 일부 마감사항(아트월 줄눈, 가구류 크기 등)이 변경되오니, 견본주택 내 부착물(PO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패키지 옵션 적용 시, 유리플랩장 사이즈 기준층과 동일하며, 유리플랩장 상부공간이 10㎝ 늘어남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 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지하 1층 2.7m, 지하 2층 2.3m	지하 1층 2.7m, 지하 2층 2.3m

■ 분양홍보물 관련사항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 및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시어 주변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혐오시설 유무 등 주위 환경을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내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건축변경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포된 홍보물은 분양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 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시 점검 항목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 등

■ 입주예정시기 : 2027년 04월 예정

- 상기 입주예정일은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

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본 아파트는 45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관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관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및 기타 등기내용 행정 절차 완료 시점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 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 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공급물건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신탁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르네상스에비뉴,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및 시공사 금호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차입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하고 분양계약(공급계약)의 체결로써 다음 사항 전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르네상스에비뉴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신탁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부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르네상스에비뉴와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분양계약(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본 사업상 시행자(사업주체)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인 ㈜르네상스에비뉴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공사인 금호건설㈜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교체(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수분양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단,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함)
-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근거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중도금대출 알선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분양계약자는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의 각 조항은 모집공고 모든 조항에 우선합니다.
- 공급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사전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게 현존하는 분양계약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르네상스에비뉴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7조제2항의 각호

의무사항		적용여부	적용내용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가. 단열조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 준수
	다. 기밀 및 결로방지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가. 설계용 외기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다.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라.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마.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사용
	바.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사.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가.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다. 조명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라.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마. 단지 내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이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XI 감리 및 보증 관련사항

■ 감리자 및 감리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계림건축사사무소	(주)대윤엔지니어링	(주)영설계엔지니어링	(주)건축사사무소건일종합기술
감리금액	₩1,702,175,900	₩488,752,018	₩96,388,000	₩156,2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 주요 내용 [중요부분 발췌]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약관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4-101-0010500호	₩106,886,65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 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XII 사업주체 관련 안내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위탁자	㈜르네상스에비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1306호(문정동, 문정역 테라타워)	110111-7917482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110111-7125720
시공자	금호건설(주)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110111-0134877

■ 견본주택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30
■ 홈페이지 : http://www.arteragn.co.kr/
■ 분양문의 : 1551-3291

■ 오시는 길

사업대상지(현장)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회산동 536번지 일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30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및 편집 과정의 특성 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4.10.25.)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과 상충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